

# 「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」(변경후: 「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」)

## 약관 변경 안내

다음과 같이 약관 변경 내용을 안내합니다. 변경된 약관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([www.kbstar.com](http://www.kbstar.com)>전체서비스>고객센터>서식/약관/설명서>예금/채권>약관)에서 조회 및 교부 가능합니다.

— 다 음 —

□ **대상약관** : 「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」 약관

□ **시행(예정)일** : 2024. 02. 21(수)

□ **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** : 여

□ **변경내용**

현 행	변 경
<p><b>제 1 조 약관의 적용</b></p> <p>① ‘<b>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</b>’(이하 ‘이 저축’이라 한다) 거래는 이 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, 적립식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.</p> <p>② 제 1 항의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주택도시기금법」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,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소득세법」, 「국고금 관리법」, 「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」 및 주택도시기금포털(<a href="http://nhuf.molit.go.kr">nhuf.molit.go.kr</a>)의 <b>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안내페이지에 제공된 「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이드라인</b>」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 고객 요청 시 「<b>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이드라인</b>」은 영업점 창구에서도 제공합니다.</p> <p><b>③ (신설)</b></p> <p><b>제 2 조 가입대상</b></p> <p>① 이 저축의 가입대상은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.</p> <p>1. 다음 각목의 소득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.</p> <p>가. 직전년도의 소득세법 상 종합소득(이자소득, 배당소득, 연금소득은 제외)이 <b>3천6백만원 이하</b>이고 소득세 신고·납부 이행이 증빙된 고객. 단, 직전년도의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가입하는 경우 전전년도의 소득을 인정합니다.</p> <p>나. 직전년도 또는 가입연도의 소득증빙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자로 소득기간이 표시된 경우 총수입금액을 연환산한 금액이 <b>3천6백만원 이하</b>인 고객</p> <p><b>2. 다음 각목의 세대주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.</b></p> <p>가. 가입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(연속하여 3개월 이상 세대주)일 것</p> <p>나. 가입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서,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(연속하여 3개월 이상 세대주)가 될 예정일 것</p> <p>다. 가입자가 무주택세대(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본인,</p>	<p><b>제 1 조 약관의 적용</b></p> <p>① ‘<b>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</b>’(이하 ‘이 저축’이라 한다) 거래는 이 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, 적립식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.</p> <p>② 제 1 항의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주택도시기금법」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,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소득세법」, 「국고금 관리법」, 「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」 및 주택도시기금포털 (<a href="http://nhuf.molit.go.kr">nhuf.molit.go.kr</a>) 의 <b>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안내페이지에 제공된 「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이드라인</b>」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 고객 요청 시 「<b>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이드라인</b>」은 영업점 창구에서도 제공합니다.</p> <p><b>③ 기존 「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」을 가입한 고객의 경우 이 저축으로 전환되며 전환일로부터 이 저축 약관의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.</b></p> <p><b>제 2 조 가입대상</b></p> <p>① 이 저축의 가입대상은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.</p> <p>1. 직전년도의 소득세법 상 종합소득(이자소득, 배당소득, 연금소득은 제외)이 <b>5천만원 이하</b>이고 소득세 신고·납부 이행이 증빙된 고객. 단, 직전년도의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가입하는 경우 전전년도의 소득을 인정합니다.</p> <p>2. 직전년도 또는 가입연도의 소득증빙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자로 소득기간이 표시된 경우 총수입금액을 연환산한 금액이 <b>5천만원 이하</b>인 고객</p> <p><b>(세대주 요건 삭제)</b></p>

**배우자 및 직계 존·비속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)의 세대원일 것**

**3. (신설)**

② 이 저축의 가입시점에 가입대상의 재직기간 및 재직여부 또는 사업 영위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습니다.

③ 이 저축의 가입은 청약저축, 청약예금, 청약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1계좌에 한합니다.

**제 3 조 납입기간**

이 저축의 납입기간은 **가입한 날부터 국민주택(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은 제외)과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로 합니다.**

**제 4 조 월 납입금**

이 저축의 월 납입금은 매월 약정 납입일에 2만원 이상 **50만원 이하**로 합니다. 다만, 월 납입금의 총액이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한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의 최대 한도인 1,500만원에 이를 때까지는 **50만원을 초과**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.

**제 5 조 이자 등**

① 이 저축의 이자는 입금한 월 납입금에 대하여 입금일부터 **해 지일 전일**까지의 실예치일수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. 다만,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.

② 이 저축은 만기가 없는 상품으로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 이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.

**③ 제 2 조 ①항 2 호 나목의 세대주 요건을 동 저축 해지 전까지 입증하지 아니한 경우 우대이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.**

**④ (신 설)**

**제 6 조 지급시기**

이 저축의 원금 및 이자는 가입자가 이 저축을 해지할 때 일시에 지급합니다.

**② (신설)**

**3. 직전 과세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복무중임을 증빙 가능한 현역병, 상근예비역, 의무경찰, 해양의무경찰, 의무소방원, 사회복지무요원, 대체복무요원**

② 이 저축의 가입시점에 가입대상의 재직기간 및 재직여부 또는 사업 영위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습니다.

③ 이 저축의 가입은 청약저축, 청약예금, 청약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1계좌에 한합니다.

**제 3 조 납입기간**

① 이 저축의 납입기간은 **따로 정하지 않습니다.**

**② 국민주택(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은 제외)과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계좌의 경우에도 추가입금이 가능하나, 해당 계좌의 청약권은 소멸됩니다.**

**제 4 조 월 납입금**

이 저축의 월 납입금은 매월 약정 납입일에 2만원 이상 **100만원 이하**로 합니다. 다만, 월납입금의 총액이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한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의 최대 한도인 1,500만원에 이를 때까지는 **100만원을 초과**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.

**제 5 조 이자 등**

① 이 저축의 이자는 입금한 월 납입금에 대하여 입금일부터 **일부인출 또는 해지일 전일**까지의 실예치일수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.

② 이 저축은 만기가 없는 상품으로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.

**③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.**

**④ ‘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’ 가입자 중 ‘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서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자’로 가입한 고객의 경우, 저축 해지 전까지 가입자 본인이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임을 입증 시, ‘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’ 가입기간 동안 ‘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’ 우대이율이 적용 가능합니다.**

**제 6 조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**

① 이 저축의 원금 및 이자는 가입자가 이 저축을 **일부인출 또는** 해지할 때 일시에 지급합니다.

**② 이 저축을 사용하여 청약당첨된 경우 계약금 납부목적에 한해 1회 일부인출이 가능하며, 제5조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이자를 일부인출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.**

③ (신설)

제 7 조 ~ 제 11 조 (생략)

부 칙

변경일	내용	관련조항	기가입고객 적용여부
2018.07.31.	제정	제1조 ~ 제10조	제정
2019.01.02.	변경	제2조, 제5조	미적용
2021.03.25.	제정	제11조	적용
2022.01.03.	변경	제2조	미적용
<b>2024.02.21</b>	<b>신설</b>	<b>신설</b>	<b>신설</b>

단, 이 저축으로 전환되기 전 청약하여 당첨된 기존 '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' 가입자는 일부인출이 불가합니다.

③ 일부인출 시에는 소득공제 추정 예상 금액을 제외한 범위(단, 추정 예상 금액이 없을 경우, 마지막 회차를 제외한 범위)내에서 입금회차별 선입선출방식(회차내 금액 분할 불가)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.

제 7 조 ~ 제 11 조 (현행과 같음)

부 칙

변경일	내용	관련조항	기가입고객 적용여부
2018.07.31.	제정	제1조 ~ 제10조	제정
2019.01.02.	변경	제2조, 제5조	미적용
2021.03.25.	제정	제11조	적용
2022.01.03.	변경	제2조	미적용
<b>2024.02.21</b>	<b>변경</b>	<b>제1조 ~ 제6조</b>	<b>적용</b>

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고객센터(☎1588-9999)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